

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8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8. 22.

이정숙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8. 29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9. 10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이정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,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음.
- 본 조례는 고성군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,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·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바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2) 군수의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3)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·시행 및 관계 기관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4)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5) 예산의 지원 및 예방교육,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- 6)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43호

- 예고기간: 2025. 8. 22.(금) ~ 8. 28.(목)[6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
○ 제정 취지(적정성/타당성)

- 「아동복지법」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,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조례안 구성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
- (안 제1조~제3조)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군수의 책무
- (안 제4조)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정함. 다만 제2항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범위가 상위법보다 제한되었다고 판단됨.
- (안 제5조~제8조)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,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,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위원회의 기능
- (안 제9조~제10조) 예산지원,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위탁 근거
- (안 제11조) 비밀 준수의 의무

○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 아동의 안전 체계구축을 위한 고성군의 책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됨으로써,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제정에 법적, 제도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9. 10. 수정가결

- 붙 임 1. 「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」 수정안
2. 「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」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「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」 수정 제안서

의안번호	제2984호 관련
------	-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	2025. 9. 10.
발 의 자	우정욱 의원

1. 수정이유

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중 신고의무 범위가 상위법보다 제한되어 조례가 상위법의 취지나 규정을 어길 수 없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제14조제2항 중 “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”를 “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「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」 대한 수정안

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”를 “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4조(아동학대 신고의무) ① (생략)	제4조(아동학대 신고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아동학대 신고의무자”라 한다)은 <u>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</u> <u>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</u> <u>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</u>

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(이정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8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2.

발 의 자 : 이정숙, 허옥희, 최두임,
김희태, 이쌍자, 김석한 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,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음.
- 본 조례는 고성군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,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·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바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·시행 및 관계 기관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
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마. 예산의 지원 및 예방교육,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
바.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43호

- 예고기간: 2025. 8. 22.(금) ~ 8. 28.(목)[6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4. 본 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아동학대 신고의무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아동학대 신고의무자”라 한다)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

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
2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, 교육기관, 의료기관, 법원, 수사기관,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,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위원회는 「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
2.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예산지원)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) ① 군수는 전문기관,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(발췌)

□ 아동복지법
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

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
2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·교육·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
3.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·운영
4.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. 28.>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4. 7.>

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2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조사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

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하 “아동학대전담공무원”이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 <신설 2020. 4. 7.>

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0. 4. 7.>

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4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1. 26.>